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5일, 모경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모경종의원)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연장(안 제 68조제1항)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 건설기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영세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임¹⁾.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등을 보유하여 향후 판매 시 명의 이전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경우 중고차의 가격 상승으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개정안을 통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자²⁾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중고자동차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2022년판) 1072면, 삼일인포마인, 2022

2) 참고로 2024년 2분기 기준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는 33,504명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2)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기준 상향

(안 제177조의제1항제1호가목)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의 최소납부의 예외 요건을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제2항제1호가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제2항제1호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취득세·재산세 산출세액이 각각 200만원, 50만원 초과 시에는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최소납부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개세주의·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됨.

개정안과 같이 최소납부 적용기준 세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7%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가액은 2,857만원($200\text{만원} \div 0.07$)에서 4,285만원($300\text{만원} \div 0.07$)으로 상향됨.

개정안을 통해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액의 적용기준을 상향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은 4,285만원 미만의 중고자동차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85%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금의 납부 의무도 없어지므로, 2,857만원에서 4,285만원 사이의 가격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의2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가 적용되는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제177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제177의2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금액에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